

第106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2.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5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審査報告書

2000. 11.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8일 · 흥기서의원 외 4인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1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0. 11. 17)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흥기서 의원)

가. 제정이유

우리 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을 마련, 여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활동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지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5조 내지 제9조)
 - 구성 : 위원장(부구청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 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행, 결산, 지원대상 등 심의
- 기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 (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과 여성업무담당주사

다.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제정 이유

- 종로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임

나. 주요 골자

- 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내지 제9조)

다. 관련법규

< 여성 관련법규 >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기금설치에 관한 법규 >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조례 제정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규 >

○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이 법률조항에 의거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당해 조례의 의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의견청취는 동의 절차가 아니고 단순히 집행기관의 의사를 물어서 의결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절차임

라. 조문별 검토

-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이 “중로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여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음
-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7개 사업을 나열하고 있음
- 제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항으로 제3항에서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음
- 제5조 내지 제9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구청 과장 4명,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음
- 제10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규정 및 제11조의 기금관리장부 비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며
- 제12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타당함

마. 검토의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우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정액의 기금 적립 시까지는 일반회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선 상 선 위원, 현 수 한 위원, 김 정 대 위원, 정 태 순 위원)

(답변자 : 홍 기 서 위원,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안 제4조에 기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 목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일정 목표액에 적립되기 전까지는 기금의 활용은 없으리라 봅니다. 기금으로 여성의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정도는 조성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는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 요즘 경제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나,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1~2년 안에 당장 시행되리라 보지는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시행해 나간다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 기금으로 하는 사업과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예산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조례안을 검토해본 바,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삭제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문)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주무부서에서 먼저 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구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현재 서울시와 양천구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표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청취

○ 집행부의 의견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3조

- 의 견 : 여성발전기금 조례는 소외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을 잘 활용하여 여성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후 기금을 적립하는 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 2001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1.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6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0. 11. 17)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물이 노후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교남동, 종로5·6가동, 이화동청사 신축 건립

다.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승인신청 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에 취득할 재산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자 함

나. 신청사항

< 성 격 >

- 3건 모두 동청사 신축에 대한 승인 요청임

< 내 용 >

대 상 동		현 청 사				신 청 사			
동별	인구	위치	대지	건물	건축 년도	위치	대지	건물	공사비 및 준공일
교남동	9,277명	교북 35-5	144평	124평 (지하1층 지상3층)	1975	행촌180-10 외 5	177평	450평 (지하1층 지상4층)	2,025백만원 2002년11월
종로 5·6 가동	8,621명	효계 84-1	48.6평	132평 (지하1층 지상3층)	1980	효계 173-2	176평	479평 (지하1층 지상4층)	20억원 2002년 4월
이화동	11,684명	이화149-1	150.2평	126평 (지하1층 지상3층)	1976	이화 149-1	150.2평	450평 (지하1층 지상4층)	2,025백만원 2002년 4월

< 신축이 취득으로 간주되는 이유 >

- 향후 등기상 물건변동이 초래되므로 취득으로 간주하게 되며 2000년 8월 9일자 서울시 작성 지침에 취득으로 간주토록 시달되었음

다. 신축부지상의 멸실대상 기존 건축물 현황

동 명	신축예정지	기존 건축물 내용		대지면적(평)
		구 조	면적(평)	
교 남 동	행촌동 180-10	세멘블록평옥개 2층	13.81	23.8
	행촌동 180-16	세멘블록와조 2층	29.8	26.6
	행촌동 180-18	“	21.1	23.7
	행촌동 180-19	철근슬라브 3층	68.6	33.3
	행촌동 180-23	벽돌평옥개 2층	20.8	44.2
	행촌동 180-29	세멘평옥개	13.8	24.8
	소 계		167.91	176.4
종로5·6가동	효제동 173-2			84.7
	효제동 173-3			25.3
	효제동 173-5			19.3
	효제동 173-6			24.6
	효제동 173-21			22.1
	소 계			176.0
이 화 동	이화동 149-1(구 동청사)	철근슬라브 지하1층, 지상4층	126.1	
	이화동 149-1(구 파출소)	연와조슬라브 2층	38.3	
	소 계		164.4	150.2

라. 신청사부지 확보 경과

교남동청사 부지

○대상부지

- 위 치 : 행촌동 180-10 외 5필지
- 면 적 : 177평

○매 입

- 일 시 : 2000년 10월 20일 가등기(12월 20일 본등기 조건)
- 가 격 : 12억 6,149만 8천원

○추진경위

- 2000년 7월 ~9월 토지매수협의 추진
- 2000년 9월 7일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반영
- 2000년 10월 20일 가등기 완료(12월 20일 본등기 이행)

○입지조건

- 동 중심에 위치하여 전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량소통도 원활한 지역이며
- 대지모양이 반듯하여 활용도가 높으며
-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 적용지역임

종로5·6가동청사 부지

○대상부지

- 위 치 : 효제동 173-2 외 4필지
- 면 적 : 176.2평

○매 입

- 일 시 : 2000년 5월 10일 등기 완료
- 가 격 : 17억 7백만원

○추진경위

- 1999년 9월~12월 토지매수협의 추진
- 1999년 11월 22일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 2000년 5월 10일 매입(등기필)

○입지조건

- 대지양쪽에 4m도로가 접해있어 차량통행이 용이
- 대지모양이 장방형으로 이용효율이 다소 떨어짐

이화동청사 부지

○대상부지

- 위 치 : 이화동 149-1 (현청사)
- 면 적 : 150평

○신축 필요성

- 현 청사대지 중 일부를 이화파출소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파출소가 이전되어 부지 활용도에 변수 요인이 발생
- 청사가 1976년도에 신축된 노후시설로서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미흡

마. 신규재산취득시 사전절차를 규정한 법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 - 예산편성시 검토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도는 2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2. 시·군·자치구는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취득·처분으로 하고,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78조 > - 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공유재산심의회외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바. 검토의견

○본 계획은 2001년에 운용될 재산운용 법정계획으로 범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나 1개 과만 신청 되어 있음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 병 환 위원, 이 헌 구 위원, 홍 승 태 위원, 이 형 술 위원, 박 종 식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총무과장 이 동 명)

문) 교남동과 종로5,6가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기존의 동청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 아직은 구체적 활용계획이 입안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 종로5,6가동과 이화동 청사는 준공예정일이 2002년 4월인데 교남동청사가 2002년 11월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현재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다른 동청사 준공일에 맞게 교남동도 4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남동 청사는 '96년에 증축하였는 바, 이제와서 다시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답) 그 당시 동기능 전환이 이루어지리라 예측하지 못했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한 것으로 근시안적 행정이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긴 안목을 내다보는 정책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 통상적으로 4~5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기간이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공사기간이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부실공사를 막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대한 공사기간을 산정한 것이나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이 평당 450만원이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이 가격이 적정하다면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이 지어져야 하고 이보다 적은 가격으로 훨씬 훌륭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음으로써 우리 구가 타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공사비의 거품을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답) 자재와 건설비용은 조달청 가격과 지침에 의해 정하여 지며,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경제적으로 건설한 건물이 지어지도록 관리 감독에 힘쓰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